경제혁신

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보도참고자료

희망의 대한민국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대책단 과장 여한구(02-3497-1783), 이주영 사무관(1788)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 공개

- 정부 「협정문 분석 T/F」에서 정밀 검토 착수 -

□ 우리시각 금일 오후 TPP 협정문이 뉴질랜드 등 TPP 참여국 정부 웹사이트 등을 통해 공개되었음

(관련 웹사이트 : mfat.govt.nz(뉴 외교통상부))

※ 금번에 공개된 협정문은 법률검토(legal scrub)가 완전히 종료되지 않은 것이며 정식 서명 시점까지는 협정문 일부 수정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

□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미 FTA를 기본으로 협상이 이루어진 바, 시장접근과 규범분야 모두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됨.

○ 시장접근 분야의 경우, TPP 협상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약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를 달성한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한·미 등 우리 기체결 FTA의 자유화 수준(98~100%, 품목수 기준)과 유사

※ 다만, 공산품의 경우, TPP 협정상 미국의 對日 양허 즉시철폐 비율(수입액 기준)은 67.4%인 데 반해,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되어온 한·미 FTA에서는 '17.1.1일부로 미국의 관세 약 95.8%(수입액 기준)가 무세화 되는 등 주요 시장에서 시장 선점효과 지속 예상 (이 밖에 '17.1.1일 기준으로 한·호 FTA는 96.7%, 한·캐 FTA는 95.9%의 관세 철폐 예정(수입액 기준))

○ 한편, TPP 규범 분야는 WTO, 복수국간 서비스협정(TISA) 협상 등에서도 논의되고 있는 글로벌 트렌드를 반영한 것으로, 향후 글로벌 통상규범화될 가능성이 높은 바, 우리 경제의 관련 제도 개선 측면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

- 한·미 FTA(24개 챕터)에는 없었던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 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조화 등 신규 챕터들이 새롭게 추가

○ 우리가 TPP에 참여하게 될 경우 서비스·투자 시장 및 정부조달 시장 개방폭 확대, 지재권, 전자상거래 등 규범 및 제도 통일·선진화 등으로 인해 중소기업을 포함한 우리 기업들의 수출과 투자 진출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정부는 TPP 협정문 공개에 따라 현재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부처「TPP 협정문 분석 T/F」를 즉시 가동하여 세부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양허결과, 우리 기체결 FTA와의 비교, 새롭게 도입된 규범들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해나갈 계획

MOTIE MINISTRY OF TRADE, INDUSTRY & ENERGY

○ 또한, 내일(11.6(금), 16:00) 개최되는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위원장: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TPP 협정문 분석계획을 상세히 논의할 예정임

○ 이를 토대로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칠 세부적인 영향을 철저히 분석하고, 공청회, 국회보고 등 통상절차법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정부 입장을 최종 확정할 계획임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06 11:24:31

< 참고 : TPP/ 한미 FTA 챕터 비교>

	TPP (30개)	한미 FTA (24개)
1	최초규정 및 정의	
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 접근	상품
		농업
3	원산지	
4	섬유 및 의류	
5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6	무역구제	
7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8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9	투자	
10	국경간 서비스 무역	
11	금융서비스	
12	기업인의 일시입국	無
13	통신	
14	전자상거래	
15	정부조달	
16	경쟁	
17	국영기업	無
18	지식재산권	
19	노동	
20	환경	
21	협력 및 역량 강화	無
22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無
23	개발	無
24	중소기업	無
25	규제 조화	無
26	투명성 및 반부패	투명성
		의약품 및 의료기기
27	행정 및 제도규정	1개 챕터
28	분쟁해결	
29	예외	
30	최종규정	

<첨부> TPP 협정문 설명자료 (Fact Sheet)

TPP 협정문 설명 자료

2015. 11월

MOTI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산업통상자원부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06 11:24:31

I. TPP 협정문 개관

1 시장접근 분야

TPP 당사국은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품목수 기준)의 자유화 수준을 달성할 예정임.

특히, 공산품의 경우 TPP 10개국이 장·단기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이며, 호주(99.8%), 멕시코(99.6%)만 일부 품목에 대해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임. 당초 예외없는 완전한 관세철폐를 목표로 출발하였으나, 협상 중 각국의 민감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임.

2 규범분야

TPP 협정문은 총 30개 챕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영기업,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 신규 통상이슈들을 별도 챕터로 구성하고 있는 것이 특징임.

내용적인 측면에서, TPP 규범은 전반적으로 한·미 FTA와 유사한 수준이나, 21세기 무역규범 제정을 목표로 일부 새로운 요소들을 도입하고 있음.

우선, 다자간 FTA의 특성을 반영하여 12개 당사국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을 통일하여 기업들이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고,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와 공정에 대한 원산지 완전 누적을 허용하여 글로벌가치사슬(GVC) 형성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역내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영기업에 대한 규율을 통해 민간기업이 국영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고, 디지털 경제의 지속적인 확대 추세에 대응하여 관련 산업의 자유로운 해외 진출을 촉진하는 한편,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도록 하였음. 아울러, 환경 분야에서 생물다양성, 해양오염 방지 등 국제적으로 논의되어 온 이슈들을 반영하였음.

특히, 국영기업, 환경(수산보조금),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지재권 등 일부 챕터에는 한·미 FTA 대비 신규 혹은 다소 강화된 의무가 도입되어 있어, 향후 글로벌 규범 수용 및 제도선진화 등 종합적 측면에서 세부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여 대응방안을 마련해나갈 계획

TPP 협정문 전반에 거쳐 적용되는 이슈(cross-cutting)로 협력 및 역량강화,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개발, 중소기업, 규제 조화 등 새로운 무역규범을 도입하여 동 분야에서 당사국간 협력을 강화해나가도록 하였음.

TPP 협정문의 조속한 발효와 비준 촉진을 위해 일정기간(서명 후 2년)이 지난 뒤에는 GDP 합계 85% 이상을 충족하는 6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동 국가들 간에 우선적으로 협정이 발효하도록 함.

MOTI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06 11:24:31

Ⅱ. TPP 협정문 주요 내용

1. 시장접근 분야

※ 자유화 수준은 별도 표시가 없는 한 품목수 기준임
※ TPP 국가의 공산품 통계는 일본 발표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우리 공산품 기준과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시장개방 수준)** TPP는 높은 수준의 포괄적 자유화를 기본 목표로 협상을 추진해 온 결과, 관세가 즉시철폐부터 최장 30년 철폐를 통해 최종 95~100%의 높은 자유화 수준을 달성키로 합의

○ 공산품의 경우, TPP 10개국이 장·단기간에 걸쳐 관세를 100% 철폐할 예정이며, 호주(99.8%), 멕시코(99.6%)만 일부 품목의 예외 인정

※ 이는 당초 예외없는 관세철폐 목표에서 협상 과정을 통해 일부 국가의 민감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해석

〈 TPP 국가별 양허현황 (품목수 기준) 〉

구분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말레이시아
전체	**100%**	**95%**	**99%**	**100%**	**99%**	**100%**
공산품	100%	100%	100%	99.8%	99.6%	100%
구분	**싱가포르**	**칠레**	**페루**	**뉴질랜드**	**베트남**	**브루나이**
전체	**100%**	**100%**	**99%**	**100%**	**100%**	**100%**
공산품	100%	100%	100%	100%	100%	100%

* 일본(경제산업성 등)에서 공개된 자료 인용
* 공산품의 품목 분류는 국가별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우리나라 기체결 FTA와 비교)** 우리 기체결 FTA 상대국의 시장개방 수준은 대체로 98~100%로, TPP와 유사한 수준

○ 공산품(이하 수입액 기준)의 경우, 우리나라의 기체결 FTA는 이미 발효 후 관세철폐가 상당히 진행되어, '17.1.1일 기준으로 한·미 FTA(발효 6년차)에서는 미국 공산품의 95.8% 관세가 철폐될 예정이며, 캐나다(95.9%, 발효 3년차), 호주(96.0%, 발효 4년차) 등의 경우에도 대체로 시장 선점효과 지속 예상

– TPP 미·일 양허와 한·미 FTA 비교시, 자동차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최장 30년까지 장기 철폐하였으나, 한·미 FTA에서 최장 10년 내 철폐

* 미국은 TPP에서 일본 승용차에 대해 2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나 한·미 FTA에서는 2016.1.1일부로 철폐(5년 철폐) 예정

– 반면, 기계, 전자·전기 분야의 경우 미국이 일본에 대해 대다수 품목의 관세를 즉시 철폐하였으나 한·미 FTA에서는 일부 가전제품을 10년에 걸쳐 철폐(2021.1.1)하여 TPP 발효시 미국 시장에서 일본과 경쟁이 심화될 가능성

○ 한편, 베트남, 말레이시아의 경우 TPP에서 높은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자동차, 철강* 등의 고관세 철폐의 효과 기대

* 승용차(20~70%), 화물차(24%), 철강제품(15~30%)

〈 TPP 회원국의 대일 공산품 개방 및 우리 기체결 FTA 수준과의 비교 (수입액 기준) 〉

구분		미국	캐나다	호주	페루	싱가포르
TPP 對日 양허	관세철폐율	100%	100%	99.8%	100%	100%
	즉시철폐율	67.4%	68.4%	94.2%	98.2%	100%
韓 기체결 FTA	관세철폐율	100%	100%	100%	100%	100%
	무관세율('17.1)	95.8%	95.9%	96.7%	89%	100%

* TPP의 관세철폐율/즉시철폐율은 일본(경제산업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인용
* 공산품 구분 기준은 우리나라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MOTIE
ISTRY OF
DE, INDUSTRY &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06 11:24:31

2. 규범 분야

1. 최초 규정 및 정의

최초 규정 및 정의 챕터는 TPP 협정과 다른 협정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고 한 개 이상의 챕터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담고 있음.

2.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상품 챕터는 한·미 FTA 등 기체결 FTA와 유사한 방식으로 역내 상품에 대해 부과하는 수입 관세의 철폐 및 인하 의무와 방식, 수입 상품에 대한 내국민대우 등 기본적인 의무들을 규정함.

3. 원산지

원산지 챕터는 상품이 TPP 역내산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과 원산지 증명, 검증 절차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TPP 12개국 간 무역에는 동일품목에 대하여 단일 원산지 규정이 적용되며, 역내에서 생산수행된 재료와 공정을 모두 누적하여 원산지 판정시 고려하는 완전누적 기준을 도입함.

4. 섬유 및 의류

섬유 및 의류 챕터는 한·미 FTA와 유사한 내용으로 섬유 및 의류제품이 TPP 역내 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원산지 기준(원사기준, yarn-forward)과 수입이 급증할 경우 수입국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치(세이프가드 조치) 요건을 규정함.

5.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챕터는 한·미 FTA의 주요 통관 관련 규범과 유사한 내용으로 상품 수출입 과정에서 수반되는 관세 및 통관절차에 대한 예측가능성, 투명성 및 신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의무들을 규정함.

6. 무역구제

무역구제 챕터는 한·미 FTA 와 대체로 유사하며 급격한 수입증가, 불공정한 가격 및 보조금 관행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로서, 긴급수입 제한조치,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투명성 및 적법 절차와 관련된 의무를 규정함

7.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SPS)

위생 및 식물위생조치 챕터는 개별 국가의 위생 및 검역조치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면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함. 각 당사국의 SPS 조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하여야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규정함. 당사국들 간에 제기되는 SPS 관련 문제 발생시 해결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채널로서 기술협의(consultation) 메커니즘을 설립함.

8.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챕터는 한·미 FTA와 유사한 내용으로 각 당사국의 기술규정과 표준이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적용되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함. 화장품, 의료기기, 의약품, 정보통신 제품, 와인 및 증류주, 포장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한 독점 성분표, 유기농 제품의 7개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별도의 부속서를 새롭게 채택함.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기술규제 관련 무역장벽이 완화되어 우리기업의 개도국 시장진출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9. 투자

투자 챕터는 투자환경 제고, 투자 보호 및 자유화 관련 사항을 규율하고 투자자의 권리 보호 및 구제를 위해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를 포함. 한·미 FTA 등 기체결 FTA상 의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투자의 설립 前과 後에 대한 내국민대우(NT), 최혜국 대우(MFN)를 보장하고 이행요건(PR) 부과 및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국적 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의무를 포함하고 상기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는 유보에 기재하도록 함. 또한 최소기준 대우, 수용 및 보상, 송금 보장 의무를 규정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이 기체결 FTA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수준의 투자 규범을 수용함으로서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상기 국가에 진출해 있는 우리 투자자들에 대한 보호수준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10. 국경간 서비스공급.

TPP 국경간 서비스 공급 챕터는 국경간 서비스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와 관련하여 한·미 FTA 등 기체결 FTA 상의 의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당사국 서비스 공급자에게 내국민 대우(NT) 및 최혜국 대우(MFN)를 보장하고, 시장 접근(MA) 제한 조치와 현지 주재(LP) 조치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의무를 포함하고 상기 의무들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는 유보에 기재하도록 함.

11.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 챕터는 역내 금융 서비스 무역을 촉진하고 차별적이거나 불필요한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한·미 FTA 등 기체결 FTA 상의 의무와 유사하게 상대국 금융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내국민 대우(NT), 최혜국 대우(MFN)를 보장하고 시장 접근(MA) 제한 및 고위 경영진과 이사회에 대한 국적 제한 조치를 도입하지 않도록 하는 기본의무를 포함하고 상기 의무에 합치하지 않는 조치는 유보에 기재하도록 함.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06 11:24:31

12. 기업인의 일시입국

기업인의 일시 입국 챕터는 TPP 역내 기업인의 일시 입국과 관련된 요건, 절차의 투명성 제고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TPP 역내 기업인들의 출입국 활동의 원활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됨

13. 통신

TPP 통신 챕터는 한·미 FTA 등 기존 협정상의 의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통신 분야에서의 지배적 사업자에게 교차보조 금지를 금지하고 재판매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제한 부과 금지, 상호 접속 허용, 전용회선 서비스 제공 의무 등을 규정함. 또한, 국제 모바일 로밍 서비스의 관련 규범이 신규로 도입되어 동 분야 경쟁을 촉진하고 로밍 관련 대안 서비스의 사용을 활성화하도록 함.

14. 전자상거래

TPP 전자상거래 챕터는 전자상거래 분야에서 불필요한 국내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간 디지털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당사국의 의무를 규정함. 한·미 FTA 등 기체결 FTA와 유사하게 전자적으로 전송되는 디지털 제품에 대한 무관세 관행 유지와 비차별 대우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면도 공공정책 목적에 따른 정부 규제 권한을 인정함.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일본 등이 기체결 FTA에서 수용하지 않고 있던 높은 수준의 전자상거래 규범을 TPP에서 수용한 바, TPP 참여시 경쟁력있는 우리 기업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5. 정부조달

정부조달 챕터는 정부조달 시장에서 TPP 당사국간 정부조달 시장의 자유화를 증진하고 상호 무역 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규범을 마련함. 전반적인 규범 내용 및 수준은 WTO 정부조달협정(GPA) 및 한·미 FTA 규범과 유사하며,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12개 당사국 중 우리와 GPA 또는 FTA를 통해 정부조달시장을 개방하지 않은 4개국(멕시코, 브루나이, 베트남, 말레이시아)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정부조달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16. 경쟁

TPP 경쟁챕터는 모든 상업 활동에 있어 당사국이 공정한 시장 경쟁기반을 구축하고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기 위한 경쟁법 체제를 유지하도록 하는 규범을 마련함. 전반적으로 한·미 FTA상의 규범 내용 및 수준과 유사하나, 한·미 FTA 경쟁챕터를 TPP에서는 경쟁챕터와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챕터로 분리하여 규율하고 있음.

17. 국영기업(SOE) 및 지정독점

TPP 국영기업(State-Owned Enterprises) 및 지정독점(Designated Monopolies) 챕터는 국영기업이 민간기업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영기업(SOE)이나 지정독점이 상품·서비스를 사거나 팔 때 국내외 기업을 차별 없이 대우하고, 통상적인 민간 기업의 영업 관행과 일치하도록 해야 하는 상업적 고려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또한 국영기업(SOE)에 대해서는 정부 보조 등 비상업적 지원으로 상대국에 부정적 영향을 주거나 상대국 산업에 피해를 야기할 경우, 상대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그 부정적 영향이나 산업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분쟁해결절차에서 승소하는 경우에 한해 정부 지원이 제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계관세 부과 등의 조치는 규정하지 않음. 다만, 同 규범은 당사국이 국영기업(SOE)을 통해 공공정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 유연성을 부여함.

18. 지식재산권

지식재산권 챕터는 특허, 상표, 저작권, 산업디자인, 지리적 표시, 영업비밀, 집행 협력 등의 분야에서 지식재산권의 보호 및 집행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한·미, FTA상, 유사한 수준의 의무를 담고 있음. 신약 시판허가를 위해 당국에 제출된 원개발자의 자료를 최소 5년간 보호하고, 생물의약품의 경우 8년간 보호하도록 하거나 최소 5년 이상 보호하면서 기타 수단으로 8년에 상당하는 보호를 하도록 함으로써 구체적인 보호 방식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부여함.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역내 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의 지재권 보호가 강화됨으로써 안정적인 교역 및 투자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됨.

19. 노동

노동챕터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노동권과 관련 노동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함으로써 근로자들의 노동기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의무를 규정함. 한·미 FTA 등 우리가 체결한 FTA상의 의무와 유사한 수준으로, 1998년 ILO 선언상 주요 노동기본권을 각 당사국이 국내 법령 등에 채택·유지하도록 하고 무역 및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으로 기본 노동권 관련 국내법 적용 및 집행을 면제하는 것을 금지함.

20. 환경

환경챕터는 환경법 및 정책을 채택하는 각 국가의 주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를 제공할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자간 환경협정 등 국제적 약속을 확인하는 한·미 FTA등 기존 조약상의 의무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 다만 해양 환경보호를 위한 불법어업(IUU;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06 11:24:31

fishing)에 대한 보조금, 과잉어획 상태의 어족자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보조금의 금지조항 등을 신규로 도입하고 금지 보조금에 대해서는 발효 후 3년의 유예기간을 설정함

21. 협력 및 역량강화

협력 및 역량강화 챕터는 다양한 경제수준의 국가들이 TPP 협정을 원활히 이행하고 협정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동 규범은 궁극적으로 무역을 통한 선진국과 개도국의 동반성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22.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경쟁력 및 비즈니스 촉진 챕터는 TPP 협정이 각 당사국과 전반적인 아태지역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마련함. 동 규범은 특히 중소기업의 역내 공급망 참여 증진에 주안점을 두고 있어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TPP로 인한 혜택을 적극 활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23. 개발

개발 챕터는 TPP회원국의 개발과 장기적인 경제발전 도모를 위해 지속가능한 개발 추진, 여성의 경제 개발 참여, 교육 및 과학기술 등 경제 개발 기반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함. 이는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발전과 회원국간 경제통합을 달성하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됨.

24. 중소기업

중소기업 챕터는 당사국이 중소기업에 대하여 관련 정보지원 강화, 서류 및 통관절차 간소화, 수출상담, 교육 프로그램 등을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이 TPP의 실질적 혜택을 향유하도록 하고 있음. 동 규범은 TPP 역내 중소기업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특히 우리나라가 TPP에 참여할 경우 중소기업들이 TPP 역내 글로벌 가치사슬 참여, 역량 강화 등을 통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긍정적인 기회 모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25. 규제조화

규제조화 챕터는 당사국간 국내 규제에 대해 높은 수준의 일반원칙을 정하고 국내규제게 이에 부합하도록 협력해나가도록 함. 다만, 회원국 국내정책을 존중하기 위해 회원국간 규제조화는 권고의 형식으로 규정함. 동 의무는 TPP 국가간 비관세장벽을 완화함으로써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됨.

26. 투명성 및 반부패

투명성 및 투명성 및 반부패 챕터는 한·미 FTA 등 우리가 기체결한 FTA와 유사한 수준으로 협정상 의무와 관련된 국내 법규정 등에 대하여 당사국간 정보제공과 의견수렴 기회를 보장하고, 무역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뇌물수수·부패를 근절하기 위기 위한 의무를 규정함.

27. 행정 및 제도규정

행정 및 제도규정(Administrative and Institutional Provisions) 챕터는 장관 또는 고위급 관료로 구성된 TPP 위원회(Trans-Pacific Partnership Commission)를 설치하여, 협정의 원활한 이행·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함.

28. 분쟁해결

TPP 분쟁해결 절차는 당사국간 협의 → 패널 설치 → 패널의 심리 → 패널 판정보고서 제출 → 패널 판정의 이행 순서로 진행하며 한·미, 한·EU FTA 등 우리가 기체결한 FTA상의 일반적인 분쟁해결절차와 유사한 것으로 보임.

29. 예외

예외 챕터는 협정상의 의무 이행에 대한 예외로써, 필수적 안보 이익 및 여타 공공 이익을 위한 당사국의 규제권한을 보장하기 위한 요건들을 규정하고 한·미 FTA 등 여타 FTA와 유사한 내용으로 TPP 협정문이 공중도덕(public morals) 보호, 인간·동물·식물의 생명 및 건강 보호, 지식재산권 보호, 고갈될 수 있는 천연자원의 보존 등을 위해 필요한 조치의 도입이나 집행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함.

30. 최종규정

TPP 최종 규정 챕터는 TPP 발효, 개정, 가입, 탈퇴 등에 관한 절차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신규 국가가 가입을 요청할 경우 작업반(working group)을 설치하여 가입조건을 협의하도록 함. 모든 회원국이 국내적 비준절차를 완료할 경우 발효하는 것이 원칙이나, 서명 후 2년이 지난 후에는 GDP 합계의 85% 이상을 차지하는 6개국 이상이 비준 절차를 완료할 경우 우선적으로 동 국가들 사이에서 발효하도록 함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5-11-06 11:24:31